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44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 박대출·조경태·최은석

김상훈 · 송석준 · 이종욱

이인선 · 김종양 · 박수민

임종득 · 안철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고지서 발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인데,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아니하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의 특성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차이가 있을 뿐 신고납부및 징수절차는 신고납세제도 세목과 유사함.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하고 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이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원천세 무납부고지서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50만원 미만인 소액도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음.

이에 소액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 다.

-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 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 4.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 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고지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생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 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 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 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 당하는 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 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 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 는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 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 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달할 수 있다.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 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 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 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 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신 설>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

	<u> 지서</u>
<u> <신 설></u>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
	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
	부고지서
<u><신 설></u>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
	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고
	<u> 지서</u>
<u><신 설></u>	4.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
	였으나 신고한 원천징수세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
	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